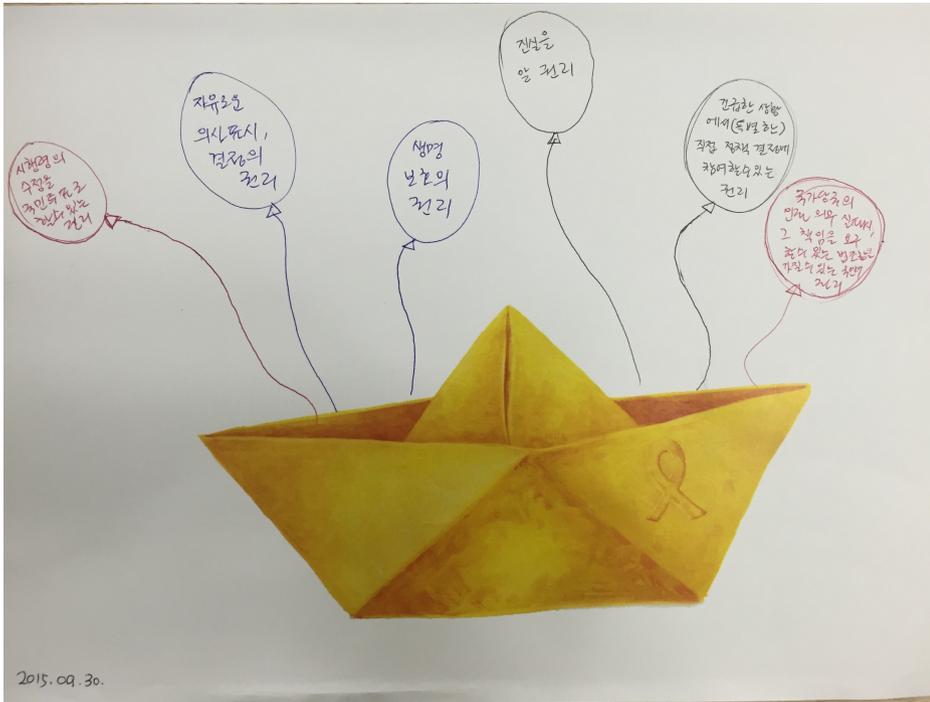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4.16 인권선언



-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
- 지금 여기에서 제대로 싸우기 위한 약속
-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의 약속

1차 전체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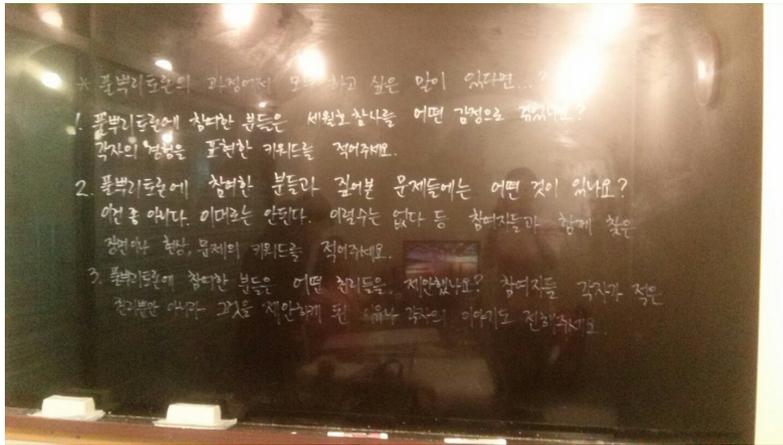


- 7월 11일, 천도교 수운회관
- 전국에서 200여 명 참석
- 인권선언을 만들기 위한 첫 토론 진행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풀뿌리 토론 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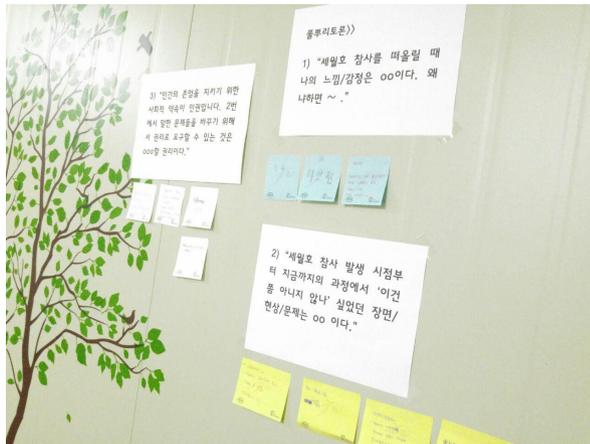
4.16인권선언 풀뿌리토론



4.16인권선언 풀뿌리토론



- 세 개의 질문
- 토론하며 제안된 800여 개의 권리



- 피해자답지 않아도 관철을 권리, 꽃을 선물할 권리, 진실을 알 권리, 정의로운 배상을 받을 권리, 서투러도 말할 수 있는 권리,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정치인을 소환할 권리, 공감을 조직할 권리, 애도할 권리, 모여서 행동할 권리, 제대로 된 언론을 가질 권리, 돈보다 생명, 혐오받지 않을 권리, 인권을 알 권리, 기억할 권리, 죽은 이들과 소통할 권리, 생명을 보장받을 권리 ...

4.16인권선언 2차 전체회의

- 1천여 명이 자발적이고 수평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함께 만들고 있는 인권선언
- 결과를 모아 모두의 선언으로 만들고 채택하는 자리
- 풀뿌리토론에 참여했던 사람들, 인권선언을 함께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
- 청문회와 2주기를 내다보며 행동을 이어가기 위한 공동의 행동과제를 토론하는 자리

4.16인권선언 2차 전체회의

그러나 우리의 혁명은
중단될 수 없다.
**선언하라,
우리를!**

문의 : 416연대 02-2285-0416
후원 : 국민 001501-04-108201 김약진(인권선언)
www.416act.net/416declaration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추진단
2차 전체회의**

세월호 참사를 함께 겪은 우리,
돌부리토론에서 제안된 천 개의 권리를 모아
다른 사회로 나아가길 선언을 만듭니다.

인권선언 추진단과 돌부리 토론에 함께하셨던 분들
그리고 4.16인권선언 운동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2015.11.28(토) 오후 1시
천도교 수운회관 대강당(3호선 안국역)

- 11월 28일(토) 오후 1시, 천도교 수운회관
- 선언하라 우리를!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초안)

1.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돈이나 권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 없다.
2. (자유와 평등)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어떠한 이유로도 억압당하거나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3. (연대) 모든 사람은 연대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으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협력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존엄하다.
4. (안전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책임)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할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5. (구조의 의무)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구조에 있어서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6. (진실의 권리) 모든 사람은 재난을 초래한 환경과 이유를 포함한 진실을 알권리를 가진다.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에는 충분한 권한이 주어 져야 하며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진실에 대한 어떠한 은폐와 왜곡도 용납될 수 없다.

7. (책임과 재발방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책임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도적 . 사회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는 부당한 해를 입었고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정부와 책임 있는 대표자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서 참여할 권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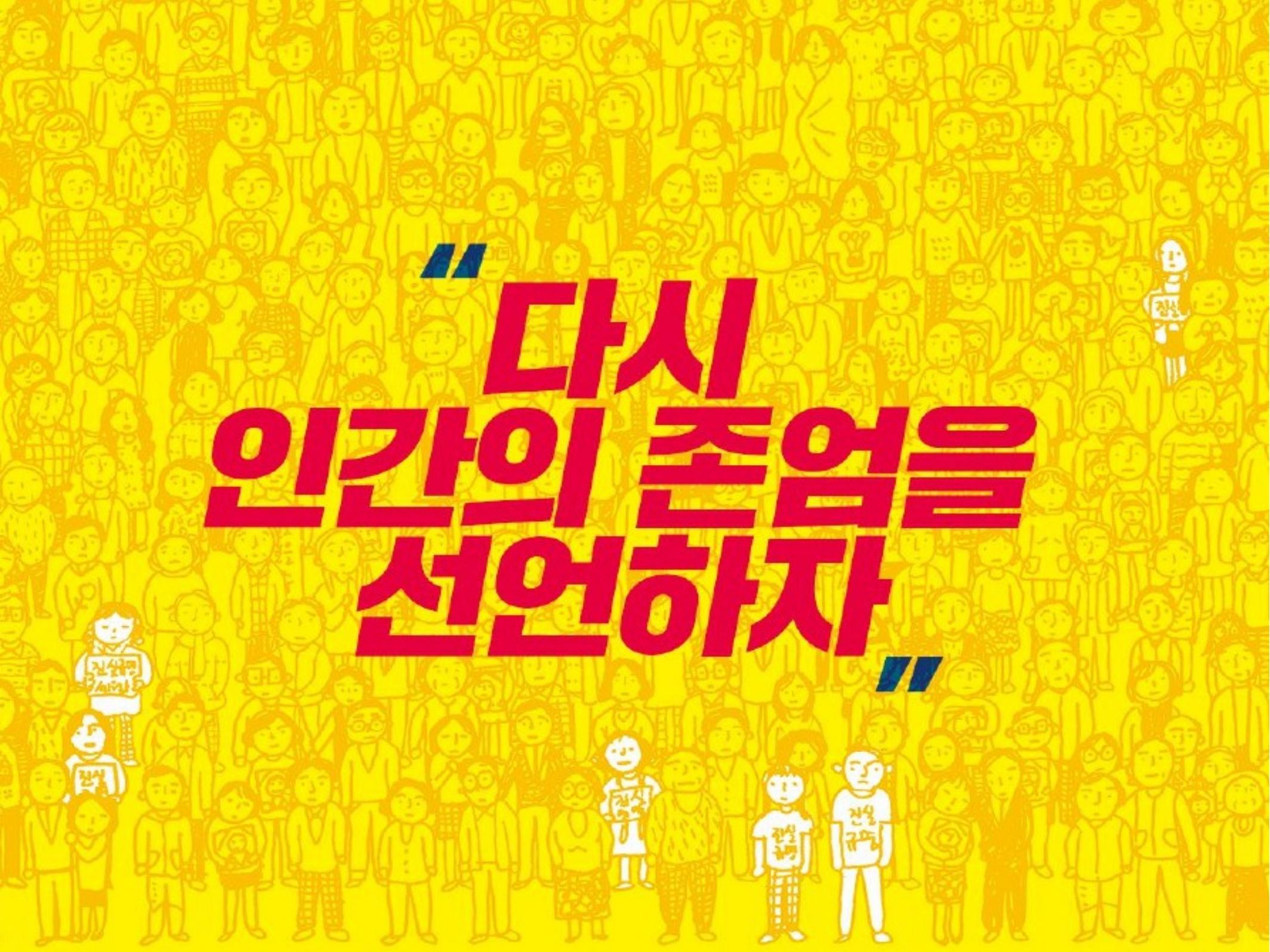
9. (치유와 회복) 피해자는 재난 발생 즉시 평등하게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동체적 차원의 치유 포함)

10. (공감과 행동) 모든 사람은 재난으로 생명을 잃은 이들을 충분히 애도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재난 피해자의 아픔에 동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권리를 갖는다.

11. (기억과 기록) 공동체는 피해자를 기억하고, 재난과 그 해결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12. (저항할 권리) 정부, 기업, 언론과 같은 권력을 보유한 기관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안전에 위해를 가할 경우, 스스로 방어하고 연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정당하다.

13.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 모든 사람은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자유와 평등, 연대와 협력,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를 가진다.



**“ 다시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자 ”**